

# 의료관광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

## 1 유치기관의 준수사항

- 유치기관의 휴·폐업 또는 대표자·전담 직원 변경 시 15일 이내에 비자포털 (www.visa.go.kr)에서 기관 회원정보(사업자/담당자 변경) 반드시 변경 등록
  - ※ 단, 대표자 · 전담 직원 변경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까지 변경 등록
- 고액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금지,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누설 금지
-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

## 2 회원자격 정지 및 취소 · 회원 재가입 제한

- 일반적 행정제재

| 제재종류<br>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회원자격<br>1월 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원자격<br>3월 정지        | 회원자격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출입국관리법 위반<br>범칙금 부과 시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01만원 이상<br>3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| 301만원 이상<br>500만원 이하 | 501만원 이상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<br>고발된 경우     |
| 고액의 부당한 수수료<br>요구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최초 적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2회 적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통상의 거래 수수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당한 사유 없이<br>개인정보 누설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최초 적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2회 적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제재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입국관리<br>사무소장의<br>정당한<br>업무지시<br>위반 | 중대한<br>경우 | 중대한 업무지시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사증발급을 허가할 수 없을 정도로<br>위반사실이 중대한 경우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미한<br>경우 | 반복적으로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정지처분 후 3월 이내 반복 위반                    |
| 허위서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과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고의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경우(범칙금 부과와 상관없음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치기관 등록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한 경우              |
| 기타 사회적으로<br>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   |           | 정도에 따라 사무소장이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적 파장이 커서 유치기관으로서 지위를<br>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|

○ 회원 재가입 제한

- 회원자격이 취소된 유치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가입 제한

※ 단,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유치기관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발급일부터 회원자격 다시 부여

○ 회원자격 취소 면제

-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유치기관 중, ①기관의 소명 내용, ②소재불명 발생 건수 및 ③출입국관리법 위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 취소 면제

○ (제재시기) 사유발생일

**3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초청자의 행정제재**

○ (근거)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8호

○ 불법체류율 산식 (단위 : %, 소수점 이하 반올림)

$$\frac{\text{신청일(또는 제재일) 기준 최근 6개월간 불법체류 발생 인원}}{\text{신청일(또는 제재일) 기준 최근 6개월간 입국한 인원}} \times 100$$

**【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 기준】**

| 입국인원 \ 제재종류 | 서면경고            | 1월 정지            | 3월 정지            | 회원자격 취소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명 ~ 10명    | 총 1명 발생         | 총 2명 발생          | 총 3명 발생          | 총 4명 이상 발생     |
| 11명 ~ 20명   | 총 2명 발생         | 총 3명 발생          | 총 4명 발생          | 총 5명 이상 발생     |
| 21명 이상      | 불법체류율<br>5%~15% | 불법체류율<br>16%~20% | 불법체류율<br>21%~30% | 불법체류율<br>31%이상 |

※ 총 발생인원은 신청일(신청이 없는 경우 제재일) 기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인원을 말함

※ (최근 3개월 이내 행정제재가 있는 경우) 최근 행정제재 이후의 최근 6개월간 입국인원과 불법체류자 비율로 산정하되, 행정제재 이전의 입국 및 불법체류 인원은 미포함

- 단, 행정제재 이후 3개월 이내 1명 이상 불법체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산정한 제재종류보다 1단계 상향

## ❖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

-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“3개월 이상 정지” 처분 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우수유치기관 자격 취소
- 우수 유치기관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일반 유치기관으로 지위 변경

## [붙임1] 출입국관리업무 전담지정 신청서

###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

|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
| 유치기관 | 유치기관명 | 등록번호   | 등록일자 |
|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|
| 대표자  | 성 명   | 주민등록번호 | 연락처  |
|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|
| 전담직원 | 성 명   | 주민등록번호 | 재직기간 |
|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|

상기 유치기관의 대표\_\_\_\_\_는(은)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을 위해 위 \_\_\_\_\_을(를) 전담직원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

20     .     .     .

\_\_\_\_\_대표

(인)서명